

지역사회인의 초등학교시설 이용

Community Resident's Use of Elementary School Facilities

민 창 기*

Min, Chang-Kee

ABSTRACT

This paper is to find out a possibility that, adapting article 81 of regional financing law, the community develops community facilities such as gymnasiums, swimming pools, and parking facilities in school site. The study requires an agreement about managements between the mayor an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is paper also surveys community's needs with respect to use of school facilities before and after class, willingness to pay for the school use, and use of school facilities by private institutions.

This paper adopts two experimental case studies to find a feasibility of community building construction in school sites. It also adopts descriptive analysis of the statistics to find out the degree of willingness to use by community people.

It is found, first, that regional financing law permits community facilities' development in school sites and an agreement between the mayor an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bout usage and profits should be made by the rate of construction fee and land cost.

The second is that 65.8% of community people want to use school facilities such as gymnasium and school ground. And favorite series of physical exercise is swimming, badminton, tennis in order. The third is that 66.4% of community people have willingness to pay for the use of school facilities. The fourth is that school facilities such as class room, special class room, and computer room can be used by private institutions. 75% of community people agree to use school facilities by the private institutions. Favorite series on these are classes for reviewing the lessons, language classes, classes for playing musical instruments in order.

1. 서 론

초·중등학교 시설의 재개발 설계를 시행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관계일 것이다. 지방

* 정희원, 평택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자치체의 시행으로 학교는 교육청 소속의 한 개 기관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인의 주요 시설로 지역사회인의 활동의 장이 되고 있다. 초등학교는 지역사회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와 지역사회는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인의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문제점과 잠재력을 도출하고 이의 해결 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인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므로써 지역사회와 학교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이론으로 삼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시설의 재개발시에 고려하여야 할 점인 지역사회가 학교에 지역사회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 지역 사회인의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욕구를 분석한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지역사회인의 학교시설 이용은 지역사회인의 발전과 학생의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역설하고 있다. 첫째, 학교의 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므로써 지역사회인의 생활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뒷다(S. C. Dutta)는 학교 시설을 이용한 지역사회인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는 학생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발달을 위하여 존재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인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민들의 오락 및 건강생활, 직업적 성공을 가져와 주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학교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과정도 지역사회의 문화와 지역사회의 이용을 감안하여 편성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¹⁾ 학교내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은 지역사회인의 교육을 담당하여 주민의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²⁾ 또 최상호는 이러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 유대감으로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³⁾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는 시·구청의 예산으로 학

교에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관, 주차장 등의 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사회인과 학생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이는 학교는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아가기 위한 기관이며 학교의 학생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건립되었으므로 학교 시설은 당연히 지역사회인의 사용이 가능하여야만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사회인의 학교시설 이용은 학생 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교 형태의 발전이 점차로 지역사회를 위한 학교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음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올슨(Olsen)은 서구의 학교는 학구적 학교, 진보적 학교, 지역사회 학교로 발전하여 왔다고 하였다.⁴⁾ 또 하비힐스트(Havighurst)와 누갈튼(Neugarten)은 전통적 학교, 지역사회의 모형으로서의 학교, 지역사회 학교 (Community School)의 형태로 발전한다고 보았다.⁵⁾ 이들은 지역사회 학교 개념에서 교육은 학생에게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상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므로 학교는 지역사회를 교육하는 기관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교육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학교의 개념의 일환으로 학교의 시설을 지역사회인이 사용하게 하여 지역사회인을 보고 배움으로써 학생에게는 학교가 산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교 시설 개방에 관하여는 6.25 동란 이후에 짹트기 시작하여 “향토학교”라는 말로 사회적 협동과 근면을 강조하는 교육을 기반으로하여 시작되어 1971년 비상사태 선포 이후에 새마을 운동의 입장에서 지역사회 학교로 발달되어 지역사회인의 학교 시설 이용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순형은 학교의 지역사회교육의 실천

1. 권연우, 지역사회 개발론, 학문사, 1995, p.173에서 채인용
2. 김남선, 지역사회개발학 개론, 형설출판사, 1991 pp40-41
3. 최상호, 지역사회 개발 행정론, 삼영사, 1983, p.52

4. Olsen and Others, School and community, New York(: Prentice-hall, Inc.), 1961, p.12
5. Havighurst and Neugarten, Society and community, New York (: Allyn and Bacon, Inc.), 1960, pp.199-210

을 위한 과정의 제접근 모형에서 학교시설의 사용 확대를 지역사회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한가지로 삼고 있다.⁶⁾ 민창기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시설 공동 활용이라는 논문⁷⁾에서 서울 성동구 제1학군 지역⁸⁾과 그안의 중학교를 대상으로하여 사례를 분석하여 서울 광희중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인의 학교 활용에 관한 공간 계획을 작성하여 수용 가능성을 전단하였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시설을 공동활용하여야 한다고는 역설하고는 있지만, 지역사회가 학교에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사회인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는 문제와 지역사회인의 교육시설 이용 요구에 대한 잠재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을 분석하려 한다.

학교의 시설을 지역사회인이 활용하므로 여러 장점이 있을 것이다. 첫째, 지역사회인은 가까이 위치한 초등학교의 체육관, 체육장, 강당 및 교실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활동, 동호인 모임, 각종 행사와 지역사회인의 재교육을 시행할 수 있어서 지역사회인의 사회적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학생은 지역사회인의 행동과 태도를 배울 수 있으므로 현장 감각이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 교육적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또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사회인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기회에 보조 교사로 봉사하기가 용이하여 학생의 교육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시설을 학교에 배치하여 지역사회인과 학생이 서로 나누어 쓰면 국가의 적은 예산으로도 지역사회인과 학생의 활동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서 국가적 견지

에서 보았을 때에도 경제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교육 시설이나 사회의 각종 사회적 시설이 일과 중에도 비어 있을 때가 많고 방학중이나 일과후에는 향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시설을 나누어 쓸 때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무수히 난립되어 있는 학원의 건물도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도시 지역의 부족한 토지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수가 줄고 있거나 학교의 부지가 넉넉한 학교에 재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 시설을 학교 안에 배치하고 시·구청이 운영 관리하고 학교가 운영 관리에 일부 참여하면 이익금으로 시·구청은 다른 지역사회시설을 재창출할 수 있고 학교는 운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어려운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금호초등학교와 구로남초등학교의 경우를 사례 연구 하였고, 전국적인 설문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 속해 있는 두 개의 사례 지역을 택하여 당해 공무원을 인터뷰함으로써 추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지역사회를 관할하는 시·구청의 예산을 학교에 투입하여 지역사회인과 학생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도적 측면과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해당 법률을 검토하고 이를 분석하여 법률을 보안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례 연구 방법의 적용에 관한 본 연구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사회인의 학교 시설 이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이므로 전국의 여러 도시의 여러 지역을 분석하기 보다 한 두개 지역을 충화하여 다양성있게 조사함이 합리적이다. 대표적인 사례 연구가 인(Yin)은 사회·현상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여러 지역의 여러 샘플을 조사하기 보다는 몇 군데 샘플을 자세히 조사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6. 이순형, “학교의 지역사회 교육의 과정 모형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 24집(사회편), 1987, pp.313-338
7. 민창기, “학교와 지역사회의 시설 공동 활용: 성동구의 중학교와 지역사회의 시설 교차 이용을 중심으로한 학교”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4권 제1호, 1997
8. 성동구 제1학군은 왕십리 1,2동, 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 1,2동, 응봉동, 금호 3,4동, 옥수 1,2동, 용답동이 포함되는 지역이다.

하였다.⁹⁾

둘째, 재개발 가능 지역을 택하여 지역사회와 학교는 중앙집권적 체제 아래 내무부(구 자치행정부)와 교육부의 통제하에 있었으므로 도심지의 재개발 및 학교 재개발의 형태가 대동 소이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연구는 한 지역의 특정한 표본에만 국한되어서는 아니되며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이어야 한다는 인(Yin)의 주장¹⁰⁾에도 본 연구는 수용된다.

셋째, 지역사회인의 학교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관련된 변수를 망라하여 분석하므로써 지역의 모집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 사례를 담고 있다. 인(Yin)은 사례가 총 망라될 수 있도록 사례를 선정하여야 한다¹¹⁾고 하였는데 이러한 면에도 본 연구는 수용된다. 끝으로, 사례의 과다로 인한 돈과 시간의 허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인의 학교 시설 이용에 관하여 체육시설 개방여부, 체육관 이용시 이용종목, 체육 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유료화 여부, 특별교실 개방 요구도, 교양강좌 참여정도, 교양강좌 선호도, 학교시설 이용 교양강좌 유료화 여부를 빙도 및 기호도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15개 시도의 재개발 대상이 되는 초등학교와 지역사회를 선정하여 각각 家庭을 임의로 1100여개을 추출하고 설문하여¹²⁾ 지역사회인이 학교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통계학의 기술적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방법의 확실성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로 충화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즉 시간적으로 한 국면의 데이터(Crosssectional Data)을 조사하였고 공간적으로는 조사된 지역사회가 전국 시도에 골고루 산재되어 있도록 하였다. 또 재개발의 대상이 되는 학교를 선정하므로써 도심지의 학교와 지역사회를 충화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3. 분석

3-1. 사례 연구 : 추진상의 문제점 검토

3-1-1. 계획 상황

● 금호초등학교의 경우

서울 성동구 금호초등학교는 부지가 주변지역 보다 10m 가량 높은 점을 활용하여 대지 15,558 m²(4,706평)에 건물 19,309 m²(5,840평)을 지하 4층 지상 5층으로 계획하고 있다.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체육시설은 지하 1층에서 지하4층까지 배치되어 있고 공사비로 43억원을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계획이다. 복지·문화시설은 지역 정보도서실 164평, 소극장 200평, 아기방 68평으로 합계 432평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체육시설은 체육관 247평, 수영장 373평, 에어로빅실 60평, 헬스실 60평으로 합하여 740평이 계획되어 졌다. 또 부설 주차장으로 362평에 120대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부지 안에 지역주민을 위한 별도의 지하 주차장으로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1,358평으로 계획되어 450대의 주차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 별도의 주차장을 위하여 서울시는 39억원의 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투입할 예정이다.

● 구로남 초등학교의 경우

구로남 초등학교는 금호초등학교의 경우와 유사하다. 구로남 초등학교 부지의 남쪽편은 주변지역 보다 5m 가량 낮다. 또 현 운동장 부지는 북쪽의 지역사회 보다 7m 가량 높다. 구로남 초

9. Yin, Robert K. The Case Study Strategy: An Annotated Bibliography, New York, 1982, p.1.

10. Yin, Robert K. and Karen A. Heald, "Using the Case Study Method to Analyze Policy Studi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20, Sept. 1975, p.378.

11. Ibid.

12. 본 설문 조사는 전국 15개 도시의 도심 부분에 위치하여 재개발이 필요한 초등학교의 주변 지역사회인을 대상으로 1996. 10 부터 1996. 12월에 걸쳐 시행되었다.

등학교 주변은 지역사회인을 위한 체육시설과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다. 부지의 남쪽면에 지역사회 시설로 체육관, 수영장, 지역 사회 문화센터 등 3,000m² (909평) 상당과 지하 5층 규모의 지하주차장 20,000m² (6,060평) 상당을 구로구청이 건립하려는 의지가 있다. 구로구청은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청에 질의한 결과 금호초등학교 경우와 같은 법적 문제에 봉착하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1-2. 제도상의 문제

“열린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교육 개혁에 발 맞추어 학교 시설은 지역사회에 열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시·구청은 지역사회인을 위한 시설을 학교 부지를 이용하여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인의 시설을 위하여 매입할 부지가 도심에는 거의 없으며, 초등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위치에 위치하여 지역사회인의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구청, 교육청, 학교는 서로의 입장은 달리하고 있다. 시·구청이 건축비를 투자한 건물에 대하여 시·구청은 투자한 재산을 소유하여 관리권 전체를 확보하려고 하며 교육청은 학교의 부지를 대여하는 대신에 반대 급부를 원하고 있다.

시·구청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재산권과 관리권을 모두 확보하기를 원하고 야간 시간 까지도 학교 시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에 학교장은 근무시간 이후에 화재, 도난 등 각종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려고 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시설을 야간 까지 개방하도록 하되 일과 이후의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제반 권리와 책임은 사용자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지역사회인의 학교시설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당해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국가 회계법상 일단 재무부 소관의 국가 세입으로 흡수되고 별도로

다른 학교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어서 해당 학교에서는 애착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지방 자치제의 시행과 함께 법률을 개정하여 당해학교에서 발생한 수입은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3-1-3. 법적 문제점

지역사회 시설을 학교 부지 내에 건립할 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인의 학교시설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럴 때 지역사회와 학교가 서로의 이익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건립 추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본다.

● 시비를 교육청 특별회계로 직접 전출 방안

현행 지방재정 교부금법상 광역자치 단체인 시·도의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으로 공립학교 교원의 인건비 전액, 특별시세 총액의 2.6%, 담배소비세 45%만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그밖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보조는 시·군 및 자치구가 도지사·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도록 규정(법 제11조 제5항)하고 있어서 지역사회인의 이용을 위한 학교시설을 시도가 직접 시비로 교육청 특별회계로 직접 전출하는 방안은 현행 지방재정 교부금법상 곤란하다.

● 시비를 자치구의 보조금으로 배분한 다음 교육청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자치구가 관할 구역 안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시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 보조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과정 개발 사업, 지역 주민 교육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 이용 체육·문화공간 사업, 기타 교육 여건 사업 등이 있으나(지방재정 교부금법 시행령 제2조), 이 경우도 당해 연도 세입중 지방세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치 못할 경우는 보조를 제한토록 하고 있어서 지역 사회인의 이용을 위한 학교시설을 시·도가 자치구의 보조금으로 배분한 다음 교육청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곤란하다. 성동구의 경우 금호초등학교 건립을 위하여 이 방안을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행정자치부로 문의한 결과 지방 재정법 제82조와 시행령 8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를 들어 불가함을 통보받았다.

● 시·도비를 자치구 보조금으로 배분한 다음 해당 자치구의 시설비 위탁 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

서울특별시 예산을 자치구 예산으로 배정후 위탁금으로 교육청에 지급하고 교육청 예산에 통합하여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되(지방 재정법 제81조(회계간 재산 이관) 적용), 시공후 재산권의 문제와 관리권의 문제가 있으므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약을 맺도록 한다. 본 연구는 이 협약서에 재산권의 구분과 관리권의 한계를 기록하되 학교는 토지를 제공하고 시는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건축면적의 1.3배¹³⁾에 해당하는 공시지가와 경제기획원 건설 단가를 적용하여 교육청과 구청이 각각 재산권을 구분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건물 사용은 공시지가와 건설비용의 비례로 사용하도록 제안한다. 관리는 시청이 하되 순수 관리비를 제외하고 이익금을 위와 같은 공시지가와 건설 단가를 적용한 투자 비용의 비율대로 이익금을 나누어 구청은 지역사회를 위한 다른 종류의 시설비로 하고 교육청은 해당학교의 운영 관리비로 충당하도록 제안한다. 주차장을 학교 운동장 지하에 배치할 경우도 위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되 학교의 교직원과 방문객을 위한 적정한 주차장을 학교측에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13. 건물을 건축하고 운영 관리하기 위한 부지의 면적을 건축 면적의 1.3배로 한다.

3-2. 지역사회인의 학교시설 이용

학교는 지역사회 시설 중의 하나임으로 지역 사회인의 사용이 허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먼저 학교는 지역 사회인에게 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장과 체육관이 열려 있어서 학교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여러 학교에서 시행하는 바와 같이 지역 사회인의 활용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일과 전후 학교의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하여는 표 1과 같이 68.5%의 지역사회인이 체육시설, 강당 등의 학교시설을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사회인의 사용의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인이 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선호하는 종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 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체육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운동장의 순서가 바람직하다. 지역사회인의 학교 체육 시설 이용을 유료화하여 관리 및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면을 설문한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66.4%의 지역사회인이 찬성하고 있음으로 분석되었다. 즉 체육시설을 유료화하면 이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체육시설 개방여부

개방여부	빈도	기호도(%)
찬성	666	55.8
중간	152	12.7
반대	279	23.4

표 2. 체육관 이용시 이용종목

이용종목	빈도	기호도(%)
수영	278	23.3
배드민턴	215	18.0
테니스	90	7.5

표 3. 체육 시설의 운영

유료화여부	빈도	기호도(%)
찬성	643	53.9
중간	149	12.5
반대	237	19.9

컴퓨터실, 도서실, 과학실, 실과실, 음악실, 미술실과 같은 특별교과목을 강의하는 특별 교실도 지역 사회인에게 열려 있어서 지역사회인의 특기 교육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교실도 지역 사회인에게 열려 있어서 각종 동호인의 모이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 일과 전·후 교양강좌를 위하여 지역사회인이 음악실, 과학실, 식당 등 학교 시설의 활용을 원하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 개방을 원하는 지역사회인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5.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사회인은 교양강좌를 위하여 학교 시설의 이용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양강좌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열릴 때 참여 여부를 설문을 통해 알아 본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82.4%의 지역사회인이 찬성 내지는 긍정하고 있어서 잠재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참여하고자하는 강좌의 종류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컴퓨터, 음악, 꽃꽂이 순으로 선호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교양 강좌를 위한 시설의 운영 측면은 교양 강좌를 위한 컴퓨터실이나 특별교실의 이용을 유료화함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82.4%의 지역사회인이 찬성 내지는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교의 특별 교실 내지는 컴퓨터실은 일과 중 사용하지 않을 때나 일과 후에는 지역사회인이 사용할 수 있게 정책을 구사하고 지급받은 사용료는 관리 및 기타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

표 6. 교양강좌 선호도

강좌종류	빈도	기호도(%)
컴퓨터	307	28.1
음악	115	10.5
꽃꽂이	93	8.5

표 7. 학교시설 이용 교양강좌 유료화 여부

개방여부	빈도	기호도(%)
찬성	666	55.8
중간	152	12.7
반대	279	23.4

조치를 강구하면 교육시설의 발전 뿐만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크게 이익이 될 것이다.

일과후에 일반교실, 특별 교실, 컴퓨터실 등의 학교 시설을 사설 학원에 대여하므로써 학교 내에 일과 후에 지역 학생을 위한 사설 학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여 주면 사교육비을 어느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인의 75%가 학교 시설이 일과후 사설 학원에 대여됨을 찬성하고 있으며 11.2%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설문조사 결과 분석되었다. 또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학생을 위하여 지역 사회인이 선호하는 학습 내용은 표 9에서와 같이 교과학습이 거의 대부분으로 38.4%를 차지하고 있고 어학 수업이 16%이며 음악 악기 수업이

표 4. 특별교실 이용 여부

개방여부	빈도	기호도(%)
찬성	666	55.8
중간	152	12.7
반대	279	23.4

표 5. 교양강좌 참여정도

참여정도	빈도	기호도(%)
찬성	678	62
중간	223	20.4
반대	133	12.2

표 8. 학교시설 학원개방 찬반유무

개방여부	빈도	기호도(%)
찬성	894	75
중간	134	11.2
반대	165	13.8

표 9. 학교에서 학원 학습 강좌

개방여부	빈도	기호도(%)
찬성	666	55.8
중간	152	12.7
반대	279	23.4

4.6%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문제에 관하여 학교 당국자는 학교가 지역 사회의 시설임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 사회인의 이용은 일과 시간 후에 주로 이용될 것이며 일과 중의 이용은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지역 사회인의 이용을 유료화하여 학교의 운영비로 재사용되도록 정부 당국은 상반되는 제반 법적 문제와 행정적 문제를 긍정적으로 적용 내지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

4. 결 어

본 연구는 먼저 시·구청의 예산을 학교에 지역사회시설의 전립에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체계에 대하여 지방 재정법 제81조(회계간 재산 이관)를 적용 시·구청 사업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형태로 교육청이 건설하도록 하고 교육청이 제공한 부지와 시·구청의 건설비의 비율로 사용권과 이익금을 분할하도록 협약을 맺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교육청에 입금된 이익금은 해당 학교에 전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해당 지역사회로 다시 환원하도록 제안하였다.

일과 전후 학교의 체육시설 이용은 지역사회인 68.5%가 체육시설, 강당 등의 학교시설 이용을 원하였고 체육 시설을 이용하여 운동하고 싶어하는 종목은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 순임이 분석되었다. 지역사회인의 학교 체육 시설 이용을 유료화하여 지역 사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를 관리 및 기타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면은 66.4%의 지역사회인이 찬성하고 있음도 또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서 지역사회인의 학교 시설에 대한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일과후에 일반교실, 특별 교실, 컴퓨터실 등의 학교 시설을 사설 학원에 대여하므로 일과후에 학교 내에서 지역 학생을 위한 사설 학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 사설학원의 임대료 감소로 사교육비를 어느정도 축소 가능함을 알

아내었다. 지역사회인의 75%가 학교 시설을 사설 학원에 일과후 대여하는 문제를 찬성하고 있고 선호하는 학습 내용은 교과학습, 어학 수업, 음악 악기 수업 순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분석된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는 교육시설 계획가에게 학교시설 재개발 계획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을 조언한다. 첫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할 때 걸림돌이 되는 점은 시·구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를 적용하고 교육청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12조(사용용도 제한)를 들어서 구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학교시설 담당자와 지역사회 시설 담당자가 관리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법 제 81조 (회계간 재산 이관)를 적용하여 도·시에서는 시·구로 예산을 배정하고 시·구청은 예산을 교육청의 예산으로 이관하여 교육장이 사용하게 하고, 시·구청장과 교육장이 협약을 맺어 시·구청과 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협약이 체결되면 학교 시설은 지역사회와 공유될 수 있어서 종국에는 교육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지역사회인의 요구에도 부응하게 된다. 이 시설물로 인하여 시·구청은 주차장과 체육관 건립 비용이 재창출될 수 있고 교육청은 학교의 시설 관리 및 운영비가 창출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학교내에 지역 주민과 학생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가 자유롭고 운영자금의 보조도 가능하도록 열려져야 한다.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사용용도 제한)에 “단, 시·구청이 지역사회인과 학생의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한 건축물 및 시설물은 그려하지 아니한다”와 같은 단서를 삽입하고 지방 재정법 82조와 동 시행령 89조를 개정하여 “시·구청이 학교에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단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와 지역사회 시설은 모두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시설이므로 두 부문은 서로 나

누어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학교는 지역 사회인에게 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장과 체육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컴퓨터실, 도서실, 과학실, 실과실, 음악실, 미술실과 같은 특별 교과목을 강의하는 특별 교실은 지역 사회인에게 특기 교육을 위한 장이 되게 한다. 일반 교실도 지역 사회인에게 개방되어 각종 동호인이 모이는 장소로 활용되도록 하고 일부는 일과 후에 사설 학원에게 임대하도록 한다. 이때 지역 사회인의 이용은 유료화하여 그 학교의 운영 비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적용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에 건립된 지역사회 시설은 지역사회인과 학생에게 공평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학교내의 수영장, 체육관 등을 일과 중에는 학생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과 전·후 또는 학생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과 중에는 지역사회인이 사용하도록 교육청과 시·구청은 사용의 한계를 협약하고 책임과 권리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역사회인이 학교 시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는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중심성을 유지하며 위치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인을 위한 학교 내의 시설은 교문 또는 후문 가까이 배치하여 지역사회인의 이용이 편리하게 계획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현

1. 권연옥, 지역사회 개발론, 학문사, 1995
2. 김남선, 지역사회개발학 개론, 형설출판사, 1991
3. 민창기, “학교와 지역사회의 시설 공동 활용: 성동구의 중학교와 지역사회의 시설 교차 이용을 중심으로한 학교,”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4권 제1호, 1997
4. 이순형, “학교의 지역사회 교육의 과정 모형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 24집(사회편), 1987
5. 정충영, 최이규, SPSSWIN을 이용한 통계 분석,

무역경영사, 1996

6. 최상호, 지역사회 개발 행정론, 삼영사, 1983
7. Havighurst and Neugarten, Society and community, Newyork(: Allyn and Bacon, Inc.) 1960
8. Olsen and Others, School and community, Newyork(: Prentice-hall, Inc.) 1961
9. Yin, Robert K. The Case Study Strategy: An Annotated Bibliography, 1982
10. Yin, Robert K. and Karen A. Heald “Using the Case Study Method to Analyze Policy Studi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20, Sept. 1975